[회의록]제208차 이사회 회의록 - 강원의료복지사협 89차

<1> 회의일시 : 2026년 2월 10일(화) 오후 6시 30분
<2> 회의장소 : 조합원 활동공간 "마중" (중앙로 80, 3층)
<3> 회의참석 : 이광희 이사장, 박준영 부이사장, 신승훈, 염은경, 김선기, 천혜란, 김태성, 이윤승, 정연우, 서연남(이상 이사, 총 10명)
참관 : 공영훈, 장동성
불참 : 최효심, 이창호

4. 성원보고
- 이광희 이사장(이하 의장)이 성원 12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제208차 정기 이사회의 개회를 오후 6시 30분에 선언하다.

5. 전차회의록
- 의장이 25년 11월 26일(수) 제207차 이사회 전차회의록을 낭독하고 의견을 물은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승인하다.

6. 보고안건
- 의장이 의안을 순서대로 상정하고 별첨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신승훈 전무이사에게 안건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다.
- 신승훈 전무이사가 논의안건을 보고하다.

7. 논의안건

□ 제1호 의안 : 2025년 11월 ~ 26년 1월 신규 가입 조합원의 가구원 이용 승인의 건

1. 제안 배경
- 협동조합기본법 및 정관에 따른 신규 가입 조합원 및 그 가족이 조합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조합 공급고 산정의 100분의 50범위를 유지함.

2. 제의관계조항
-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제58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6차 개정)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7차 개정)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7차 개정)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7차 개정)

③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

3. 제안 내용

- 25년 11월 신규 조합원 : 62세대, 93명(가구원)

조합원명	가구원			
김난수	이용섭	이유경		
김종남	황병순	김민서		
문진	김인배			
정규분				
이정숙	김주영			
김명자	이중근			
이경렬	정승자			
전주연	전만병	조정원		
신승호	김성미	신하준		
정남택	이문희			
박창례				
조유진	이시현	이예서		
이남범				
진실	이종현	이봄	이솜	
허순옥				
오세민				
최승화	유정한	유지훈	유지호	

조합원명	가구원			
박은자	유재현	유은서	유기현	
이재복	유춘자			
이경미	김유태	김나영	김하준	
이다운	임지이	이은채		
고봉웅				
정은영	안현지	안하령		
박충식	박순혁	이춘자		
차경효				
송재훈	지숙희	송현우		
곽순자				
이옥례	김윤아	김하윤		
김선영	신종현	신하성		
조수미				
전채랑	박준재			
이문희	전민구	전계형		
김덕호	엄부용			
구자용	김진규	김인희		

조합원명	가구원			
김동연	김진모	김무연	김두연	
염혜경	이정규	이소민	이민율	
장대호				
김지은	김정환	허순남		
김상겸	조태숙	김재원	김예원	
신상용	김경애			
박찬임				
김종혁	고경미	김현서	김예서	
진건후	진교술	허순덕		
민우식	이옥주	민현서	민현정	
임보라	임배관	홍의연	임준호	
김정희	이영덕	이도은	이시은	이서연
염미경	김현근	김시후	김시헌	
정인순	심광종			
정주형	정일리	정류하		
이도형	안순희			
전현후	정옥자			
이승일	김현주	이혜인		
신현갑	윤석주			
이은희	양선우	양경모	양재모	
김수진	김형학			
채주영				
김은조	원동희	원유선	원우성	송정자
정현실	조시기			
김서현				
이철민				
노진환				
이종옥				

- 25년 12월 신규 조합원 : 47세대, 38명(가구원)

조합원명	가구원			
이숙남	정용하	정근호		
이옥근	변상원			
이승우	이인호			
김순옥				
김영미	박종각			
임정희				
김민석				
안선희	최종원	최지희	최지후	
박수용	장순녀	안상예		
김상현	남복현	김윤성	김윤아	
염현주				
양숙녀	최대영			
정수남	구정임			
박영옥	남수영			
서정실				
노주비				
김초환				
오본송				

조합원명	가구원			
김영희	정규범			
김택훈	이숙자			
최명호				
노경숙	김태희			
김은민				
이수공				
조승이				
김동진	최은숙			
이경애	송풍식	송민혜		
최금순				
박만태	구현숙	박재현	박진희	
김명근	서화자			
김영서	심상범			
이종란	정규철			
조경미				
박광민				
이홍구	최현정			

조합원명	가구원			
박재영				
권경자				
명나래	명만원	이미경	명도일	
박성연	한예경	이득주	이후석	
유영태				

고정숙	최연태			
김국종	임다현			
홍정표	김기태			
김영애				
이미란				
남은심				
고숙자				

- 26년 1월 신규 조합원 : 42세대, 31명(가구원)

조합원명	가구원			
계춘자				
한동기				
오판규				
이준조				
김채윤				
강윤경				
강윤구	안명희			
강소영				
주현미	홍성복			
윤영종	남재진	남가현	남지민	
안동수				
이기식				
이인자				
박목성	정상철			
허정현	조춘원			
김광숙	이기운			
박경해	김봉균			
조미건	박영우			
김영자	유희태			
이노구	김경애			
유옥분				

조합원명	가구원			
윤귀녀	홍도식			
손봉란	이승호			
김랑자	조명래	조솔라		
박주현	김근명			
최돈실	용순옥			
김순옥	이현정	이현준		
정순옥	이천균			
박신일	김선옥			
노정숙	이종석	이다은	한결	
설현자	왕동준			
이명애	탁상휘			
조동환	김국순			
홍인숙	장인규			
전미자				
박미경				
김경순				
신미숙				
김갑진	안재용			
이효숙	정성만			
백옥희				
김경자				
전민선				

- 총 152세대(가구원 162명) *총조합원수 1,927명(26. 1월말 기준)
- 이상 조합원의 가족에 대한 조합 의료기관 이용을 승인 주문함.

-> 결정 사항 : 원안대로 승인하다.

- 추가 의견 -

□ 제2호 의안 : 2026 조직도 개편 승인의 건

1. 제안 배경
- 밝음의원 재개원 이후 의사를 제외한 의료인력(간호)으로 4명(외래 3명, 재택 1명)이 근로하였음.
- 시간이 지나 현재는 의사를 제외하더라도 외래 4명, 재택의료 4명, 가정간호 5명 등 인력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전)3인 원장 체제, 4인 원장 체제 등 의 의료파트 운영 구조 속에서 조합의 당시 상황 상 규모에 맞는 운영 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져옴.
- 작년, 7월 심평원 현지 실사, 8월 코로나 자율시정 점검 등 조합의 주사업소인 의료기관 운영 및 행정 체계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맨파워에 의존한 운영이 아닌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화가 필요해짐.
- 이에 파트 간 소통 및 행정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도 개편으로 의료사업소의 내실화 및 운영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
- 또한, 돌봄사업소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폐원에 따른 돌봄사업소의 공백을 26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인 “G-care 매니저”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함.
- 조직도 개편에 따른 직원 인사도 같이 실시코자 함.
(기본급(3.5% 인상(26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적용 검토) 및 승진에 따른 급여 인상 실시

2. 제의관계조항
-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제안 내용
- 2026 조직도 개편(안) 승인 별첨1) 2026 조직도 개편 안

-> 결정 사항 : 원안대로 승인하다.

- 추가 의견 -

□ 제3호 의안 :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의 건

1. 제안 배경

- 조합 제12차(통합 24차) 정기대의원 총회 소집에 따른 일시 및 장소 확정 및 상정 의안 확정

2. 제의관계조항

-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제안 내용

□ 제12차(통합24차) 정기대의원총회 일정(안)
- 일시 : 2026년 3월 12일(목) 저녁 6시 30분
- 장소 : 원주밝음신협 5층 대강당

□ 심의안건(안)
제1호 의안 2025년 종합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25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잉여금 처리안
제3호 의안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출자금 납부 시기 등)
제4호 의안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차입금 최고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2025년 (탈퇴, 제명, 감좌) 조합원 출자금 환급 및 지분양도, 출자금 변동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기타 안건

-> 결정 사항 : 총회의 일시, 장소를 확정하고, 심의안건 중 제3호 의안은 꼭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확인해보고 필요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다. 시급성이 없는 개정 사항일 경우 추후 총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다.

- 추가 의견 -

- 돌봄사업소 추진을 위해 차입금 최고한도액을 넉넉히 책정했으면 한다.

□ 제4호 의안 : 공생추진위원회 재정비의 건

1. 제안 배경
- 공생추진위원회는 조합원들과 조합의 돌봄사업소를 같이 고민하고 조합이 꿈꾸는 돌봄사업소의 실현을 위해 실제 설립 추진까지 진행하고자 만들어짐.
- 이를 위해 현재까지 돌봄사업소 설립 동기부여를 위한 “조합원 대상 커뮤니티케어 교육”, 공생추진위원들의 돌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높이를 맞추기 위한 “학습모임”, 대외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돌봄에세이 공모전” 등 을 다양하게 진행해옴.
- 하지만 한달에 1번, 1시간(점심시간에 진행)으로 진행되는 위원회의 활동으로는 돌봄사업소 설립을 위한 추진 속도와 방향성을 잡기에 부족함을 느끼게 됨.
- 또한, 이사회에서 승인된 TF실무팀 진행에 있어서도 의료진, 직원, 조합원 등 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돌봄사업소의 모델을 만들어감에 있어 시각차가 존재함도 확인함.
- 이에 공생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추진코자 함.

2. 제의관계조항
-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제안 내용
- 공생추진위원회 재정비 승인
- (현)공생TF실무팀 : 천혜란, 조일구, 박준영, 신승훈
- 공생TF실무팀 + @(대상자) 로 재정비
- 대상자 : (신규)공영훈 + 공생추진위원회 위원 중 희망자 + 조합원 + 직원 등
- 공생추진위원회 회의 주기 : (기존) 월 1회 -> (변경) 월 4회

-> 결정 사항 : 원안대로 승인하다.

- 추가 의견 -

□ 제5호 의안 : 원주시 통합돌봄사업 및 G-care 매니저 사업 관련 인력 채용의 건

1. 제안 배경
- 2026년 원주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을 진행 중에 있으며, 수

행기관 선정 시 인력 채용을 진행해야 함. (**보고사항. 3번 항목 참고**)
- 채용 직군은 사회복지사 1명과 (필요시)간호사 1명으로 간호사의 경우 사업의 업무량에 따라 필요 판단 충족시 채용을 진행하고자 함. (사업기간 : 2026. 3. ~ 12.(10개월))
- 또한, G-care 매니저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120명의 인력관리와 행정 등을 담담인력 1명이 맡고 있고 사무국에서 지원 하고 있지만 점차 전담 업무 인력의 충원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 임.
- 조합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 1 ~ 2개월 정도 는 내부적으로 버텨보고, 외부 사업(강원도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원주시, 행안부 등) 의 인력 지원 등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나 부분을 가용해보고자 하며, 혹 이런 상황이 충족 되지 못하거나 업무 추진 상 시급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상근직 고용 형태라도 채용을 진행코자 함.
- 인력 채용에 따른 공간 활용을 위해 “마중”의 작은방을 사무실로 구성코자 함.
 (3인 근무 가능하도록 책상, 컴퓨터 등 집기류 설치)

2. 제의관계조항
-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제안 내용
- 재택의료팀 사회복지사 1인, (필요시)간호사 1인 채용
- 노인일자리 사업 (반상근직 또는 상근직) 전담 인력 1인 채용
- “마중”작은방 사무실 구조로 변경(3인 근무장)

-> 결정 사항 : 원안대로 승인하다.

- 추가 의견 -

□ 제6호 의안 : 2026년 상임 임원 보수 결정의 건

1. 제안 배경
- 2026년 상임 임원 보수 결정

2. 제의 관계조항
-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제44조(임원의 정수)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 임원을 둘 수 있다.
- 제50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제안 내용
- 상임 임원 : 신승훈 전무이사
- 2026년 월 보수액 : 별지

-> 결정 사항 : 원안대로 승인하다.

- 추가 의견 -

서 명

의장 이광희	**이사 박준영**
이사 염은경	**이사 신승훈**
이사 김선기	**이사 천혜란**
이사 서연남	**이사 정연우**
이사 이윤승	**이사 김태성**